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547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0. 8.

판결 선고2024. 11. 12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12. 21.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3. 12. 21. 접수 제101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남효정

별지